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안덕근 (산업통상자원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감면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에게 부과·징수하는 천연가스 수입 부과금의 한시적 인하 조치 기한을 ‘2025년 6월 30일까지’에서 ‘2025년 12월 31일까지’로 6개월 연기하되,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수입부과금 인하 폭을 축소하여 천연가스 수입 부과금을 톤당 20,605원으로 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6. 13. ~ 6. 16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1항제3호 단서 중 “(2025년 6월 30일까지는 16,730원)”을 “(2025년 12월 31일까지는 20,605원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천연가스의 수입 부과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) ① 제24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「관세법」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② 제24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「관세법」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입항되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4조(부과금의 부과기준 등)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 과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. 1. · 2. (생략) 3.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천 연가스: 톤당 3,800원. 다만,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는 톤당 <u>24,242원(2025년 6월 30일까지</u> <u>는 16,730원)</u> 으로 한다.	제24조(부과금의 부과기준 등) ① -----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, ----- ----- ----- -----(2025년 12월 31일까지 는 20,605원)-----. 4. · 5. (현행과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5236